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9호 2017. 3. 03(금)

고시

○남원시 고시 제2017-22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1

공고

○남원시 공고 제2017-359호 남원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안 ----- 2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17-9호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0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17 - 22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7년 03월 03일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간사업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3. 사 업 비 : 자력사업
4. 사업내용

토지의 소유자 (사업 시행자)		토 지 의 표 시						개간대상 면적 (m ²)
성 명	주 소	시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m ²)	
조**	남원시 요천로 **** *** ****	남원	사매	계수	산54	임야	34,847	4,950

5. 사업기간 : 2017. 02. ~ 2018. 02. 28.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7-359호

「남원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안

1. 제정이유

-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패 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 공무원의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해소 및 부조리 없는 공직사회 구현, 직무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고발대상 (안 제2조~안 제3조)

- 적용범위 : 시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 및 공직자로 의제되는 사람 포함
- 고발대상 : 시 소속 공무원의 관련법령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

나. 고발여부의 판단 (안 제5조)

- 고발 판단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 부당한 행정행위가 수반되는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등
- 의무적 고발대상

- 200만원 이상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등

다. 고발 시기 및 절차 (안 제6조)

-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
- 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

라. 고발 처리상황 관리 및 고발대상 범죄행위 목인에 대한 책임 (안 제7조, 안 제8조)

- 징계 등 조치

3. 참고사항

가. 이 제정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24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감사실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063-620-6781),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감사실(☎063-620-6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예규 제 호

남원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남원시 소속 공무원(퇴직자와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남원시의 각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시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 죄에 해당되는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가 수반되는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과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를 통하여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업무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인가·허가, 검사, 승인, 등록 등에 관련한 업무
 - 나. 계약관련 업무
 - 다. 그 밖에 세입·세출관리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범죄의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공소시효 내 누계금액)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경우
 2.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 다시 금품·향응 수수 등을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명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 고발을 하는 때에는 시장의 명의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 범죄행위 묵인에 대한 책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보고 또는 고발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 발 장

1. 피고발인

- 성 명 :
- 주 소 :
- 근무처 :
- 생년월일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
-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고 발 처 리 상 황 부

일련 번호	피 고 발자 인적사항				범죄혐의사실요지	고발 기관	고발 일자	수사 기관	검 찰 청		법 원	
	범죄혐의 당시소속	고발당시 소 속	현직급	성 명 생년월일					일 자	처분내용	판 결 일 자	판결내용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17 - 9호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남원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3월 06일

남 원 시 장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 중 일부기준을 완화하고 현실화하여 우리시 경제활동친화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1]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

구분	현 행	변 경
영업시설	사무실 30제곱미터 이상(남원시 관내 소재)	1개소 이상
	전화 전화국 가입전화 1대 이상	삭제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0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5756 남원시 오들1길 56

남원시 상수도사업소(전화 : 063-620-6873, FAX : 063-620-6720)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급수담당자 노치호(전화 : 063-620-687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